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4
----------	----

2018. 9. 19.(수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8년 8월 28일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8월 31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9월 5일

-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민광기 행정국장)

가. 제안사유

- 재해·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도정업무 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
-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신혼부부와 육아기 부모가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임신·육아 직원에게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공무원 특별휴가(포상휴가) 조항 신설 (안 제18조 제10항)
 - 대상 : 지역의 재해·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린 공무원
도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된
공무원
 - 포상휴가 : 5일 이내 포상휴가 부여
- 공무원 특별휴가(모성보호시간) 조항 신설 (안 제18조 제11항)
 - 대 상 : 임신중인 공무원
 - 내 용 : 휴식, 병원진료 등을 위해 1일 최대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 부여
- 공무원 특별휴가(육아시간) 조항 신설 (안 제18조 제12항)
 - 대 상 : 만 5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
 - 내 용 :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
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, 그 외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 부여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호식)

- 이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
 - 재해·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도정업무 수행에 탁월한
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과
 - 임신·육아 직원에게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.
- 법령과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의
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임신 중이거나 만 5세 미만의 자녀를 둔
공무원에게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특별한
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의안번호	제24호
의결 연월일	2018년 월 일 (제367회)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18년 8월 28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

24

제출연월일 : 2018년 8월 28일
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이유

- 재해·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도정업무 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
-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신혼부부와 육아기 부모가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임신·육아 직원에게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공무원 특별휴가(포상휴가) 조항 신설 (안 제18조 제10항)
 - 대상 : 지역의 재해·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린 공무원
도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된 공무원
 - 포상휴가 : 5일 이내 포상휴가 부여
- 공무원 특별휴가(모성보호시간) 조항 신설 (안 제18조 제11항)
 - 대 상 : 임신중인 공무원
 - 내 용 : 휴식, 병원진료 등을 위해 1일 최대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 부여
- 공무원 특별휴가(육아시간) 조항 신설 (안 제18조 제12항)
 - 대 상 : 만 5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
 - 내 용 :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, 그 외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 부여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5. 관련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에 제10항, 제11항,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⑩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·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도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 할 수 있다.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- ⑪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.
- ⑫ 만 5세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, 그 외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8조(특별휴가)①~⑨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18조(특별휴가)①~⑨(현행과 같음)</p> <p>⑩ <u>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·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도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 할 수 있다.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</u></p> <p>⑪ <u>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.</u></p> <p>⑫ <u>만 5세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, 그 외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.</u></p>

관계 법령 발췌

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

- 제20조(특별휴가) ④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. <신설 2013. 5. 31., 2018. 7. 2.>
- 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. <개정 2018. 7. 2.>
- ⑫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.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.

□ 지방공무원법

- 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

- 제7조의3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. <신설 2013. 5. 31.>
- ⑦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.